



13 노회록검사부 보고

제106회기 노회록검사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김석용
서 기 황연호

1. 조직

- 1) 임 원 : 부장 김석용, 서기 황연호, 회계 전종욱, 총무 김인호
- 2) 실행위원 : 정진규 김선중 송봉훈 이하빈 하성호 한석기 김윤호 우제훈 김용교 박영만 정건택 정근희 성재권 이우희
- 3) 부 원 : 김현기 신진식 박태화 이말식 임윤근 이종우 이동기 이시형 이성현 정하승 김정래 조현석 이수명 명치만 정명균 임승환 조병욱 전정필 김성년 엄재희 심상구 양세정 김병근 박광일 지근호 국남주 조충현 김춘경 허대광 임동환 최재호 이길종 한정수 신동민 윤기영 전기용 이쾌세 박상희 강경희 박상렬 신태룡 최경녕 정해영 한명복 박시우 고대섭 김영복 윤영중 서상곤 이수호 윤기홍 최태열 안우엽 신근호 김용길

2. 회의

1) 실행위원회

- ☞ 일 시 : 2022. 4. 7.(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노회록 검사 일정을 정하다.
 - 가. 1차 : 6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 나. 2차 :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② 검사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③ 검사 위원을 위한 세미나는 6월 16일 10시에 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 2021. 10. 7.(목) 11:00
- ☞ 장 소 : 태능역 산들바다
- ☞ 결의사항
 - ① 임원 및 실행위원을 확정하다.

부장 김석용 장로, 서기 황연호 목사, 회계 전종욱 장로, 총무 김인호 목사
이하빈 목사, 김선중 목사, 정진규 장로, 하성호 장로, 송봉훈 장로, 한석기 목사,

성재권 목사, 김윤호 장로, 우제훈 장로, 김용교 장로, 정건택 목사, 박영만 목사,
정근희 장로, 이우희 장로(총 18명)

② 연중행사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다.

가. 임원회의 : 2월 22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

나. 실행위원회의 : 4월 5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

다. 전국 노회 회의록 실무 세미나(서기, 회록서기, 간사): 2022. 5. 30(월) 예정

라. 노회록 검사 : 6월 13일(월), 6월 27일(월)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22. 2. 21.(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실행위원회는 4월 7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② 전국 노회 회의록 세미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22. 4. 7.(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실행위원회(11시, 5층 예배실) 안전을 확인하다.

② 노회록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차기 회기(2023년)에 실시하기로 하다.

③ 노회록 검사 일자선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22. 6. 9.(목) 21: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① 노회록 검사를 6월 16일 1차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6월 30일 2차 오전 11시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하기로 하다.

②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검사방법을 위해 6월 16일 세미나를 하기로 하다(강사 : 직전 노회록검사부장 수원노회 이종문 목사).

③ 실행위원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22. 7.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반려한 노회록을 재검사하다.

② 제107회 노회록검사부 보고서와 청원서를 제출할 시 제2회 노회록 세미나(전국 노회 서기, 회의록 대상) 개최를 위해 총회에 재정 증액을 요청하기로 하다(현재 600만원, 증액 1,500만원으로).



- ③ 8월 8일 감사에 세미나 설명하기로 하다.
- ④ 7월 21일(목) 오후 3시, 임원회 모이기로 하다.
- ⑤ 대구동노회는 속회 개회 시 장로 2인으로 개회 성수가 될 수 없음을 임원회에서 확인하여 노회에 공지하기로 하다.

(6) 6차 임원회

☞ 일 시 : 2022. 8. 1.(월) 21: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 ① 총회회관에서 오전에 모이기로 했던 회의를 부장 코로나19 확진으로 영상으로 하다.
- ② 8월 8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반려했던 노회 회의록을 재검하기로 하다.
- ③ 8월 8일(월) 오후 1시 총회 감사부 준비를 하기로 하다(부장 서기 참석).
- ④ 노회록 감사부 1년 예산이 600만원인데, 105회기에 “제1회 전국노회록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석인원 300명이 참석했고, 노회록을 기록하는 법을 제대로 강의하기 위하여 제107회기에 “제2회 전국노회록세미나”를 하기로 하고 재정을 900만원 증원 총 1,500만원을 총회에 정식 청원하기로 하다.

3) 노회록 검사

(1) 제1차 노회록 검사

☞ 일 시 : 2022. 6. 16.(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세미나 강사(이종문 목사) 사례비는 100,000원으로 책정하다.
- ② 반려노회(미비사항) 돌려보내기로 하다(6개 노회).
- ③ 다음 검사일은 6월 30일(목)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다.

(2) 제2차 노회록 검사

☞ 일 시 : 2022. 6. 3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미비된 검사는 7월 18일(월) 11시 임원회에 모여 마무리하기로 하다.
- ② 제2차 노회록 세미나를 준비하기로 하고, 재정 증원 청원(1,000만원)을 하기로 하다.
- ③ 반려노회(5개 노회) 7월 18일까지 재검하기로 하다.

(3) 제3차 노회록 검사

☞ 일 시 : 2022. 7.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출노회 159개 노회, 검사노회 12개 노회, 2개 노회 추가제출 요청하다.

(4) 제4차 노회록 검사

☞ 일 시 : 2022. 8. 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추가제출 2개 노회록 검사 완료하다.
- ② 총 161개 노회 중 159개 노회, 노회록 검사 완료하다.

제106회기 노회록 검사 결과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	강동	1) 규칙부 보고 별지를 붙일 것 2) 회원 호명시 목사회원, 장로총대로 기록할 것 3) 노회, 노회장, 서기 도장이 없음
2	강북	1) 회원 호명에서 정회원과 언권회원 구분 요망 2) '정치부의 완전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에서 '~받기로 가결하다'로 기록 요망(다른 부서도 동일하게)
3	강원	1) 노회 직인 요망 2) 소집통지서와 의사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4	강중	1) 모든 페이지에 간인 누락 2) 유인물 회의록에 첨부 요망 3) 회의 폐회 시간 명시 4) 수정 시 수정자의 사인 필요 5) 자료 첨부 시 간인이 있어야 함 별지 첨부 요망
5	개성	1) 서기 도장이 누락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할 것
6	경기	1) 동의, 재청에 이은 결의 사항 누락(회의 용어상 최종 결정은 '허락하다'로 불충분, 매건 또는 매 축조건 마다 동의, 재청, 가부로 결의한 '가결하다'가 기재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결의된 것이라 할 수 없음 2) 제본된 것 제출 시 각 페이지 간인 날인
7	경기남	1) 노회 직인, 서기 성명(도장)이 누락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 3)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를 '가결하다'로 기록할 것
8	경기북	1) 노회장, 서기, 노회 직인 삽입 요망 2) '허락하다'를 '가결하다'로 표기할 것
9	경기서	1) 노회록의 기록, 보존 책임은 서기에게 있기에 회의록 끝에 서기 이름, 날인해야 함 2) 고시부 보고는 결격 사유 등 없을 시 보고사항을 받기로 동의, 재청 및 가부로 받을 것을 결정해야 함 3) 정치부 축조 보고사항은 최종 동의, 재청받아 가부를 묻은 후 결정('가결하다')해야 함, '허락하다'는 축조 보고(상징)를 '허락'한 것이며 결의된 사항은 아님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0	경기수원	1) 회의록 기록 시 빈칸 없이 기록할 것 2) 정치부 '허락하다', '완전 보고하다'로 마감한 경우 일괄 가결 처리 삽입, '가결하다'
11	경기중부	1) 임시 보고 허락의 건에 대한 가결 사항 누락 2) 다음 회기부터는 최종 일괄 '가결하다'를 기록할 것
12	경남	1) 제OO회 정기노회 → 제OO회 정기회로, 임시노회 → 임시회로 용어 수정 2) 정회원, 인권회원의 구분 필요 3)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다' 보고 후 일괄 '가결하다' 받기를 결의해야 함 4) 유인물, 별지는 첨부 바람
13	경남동	1) 정기회 소집장 첨부할 것 2)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3)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기재 후 일괄적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기재 요망 4) 유인물 별지 첨부 요망 5) 노회 준비위 모임 기재 요망
14	경동	1) 노회직인, 서기 직인 삽입할 것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입할 것 3) 규칙개정 결의 정확히 할 것
15	경북	1) 노회록 표지, 하드 케이스 제본 요망 2) 제105회기 노회록 검사 지적사항 수정 요망 3) '허락하다' → 최종 일괄 '가결하다'로 기재 요망 4) 원본 대조필 및 날인 요망
16	경상	
17	경서	1) 제OO회 정기노회 → 제OO회 정기회로 변경 2) 장로회원을 장로총대로 용어 변경 3) 각 보고의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로 하되 최종적으로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로 개지 요망 4) 노회 준비위 기재 요망
18	경성	1) 지적사항 없음
19	경성남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차> 1) 지적사항 없음
20	경신	1) 교단 명칭 오기 수정할 것 2) 규칙 현의부 보고에서 생활비 보조 청원은 정치부가 아닌 재정부로 할 것 3) 타이핑한 노회록은 회의록 페이지마다 날인 필요 4) 회원 점명시 정회원, 인권회원 분리 요망 5) 유인물, 별지는 첨부할 것
21	경안	1) 노회직인, 노회장 도장 누락 2) 별지 첨부 누락 3) 페이지 간인, 날인 누락
22	경인	1) 노회 직인, 서기 도장 누락 2) 동의, 재청, 가부 후 '가결하다' 기입 요망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23	경일	1) 서기 목사 직인 필요 2) 정기회 소집 통보서 첨부 요망 3) 회원 점명 시 목사회원,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정회원과 준회원 구분) 4)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는 문구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로 수정
24	경중	1) 일부 허락의 건이 최종 가결된 사항이 없음 2) 수기 기록 빈칸 없이 할 것 3) 서기 목사 직인 누락 4)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입 요망
25	경천	1) 정기노회 → 정기회, 장로회원 → 장로총대 용어 정정 2) 노회 직인 및 노회장 인장 날인 누락 3) 정치부 축조 보고 한 안건에 대해 '허락이요'라 함은 상정(보고)에 대한 허락에 불과하고 추후에 전체의 축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 재청받아 회장이 가부를 물어 본회의 최종 결의를 하고 이 사항을 회의록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함 4) 시찰보고 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수를 보고 받아 기록 요함 5) 정회 시 정회를 위한 기도가 누락되었는바 차기부터 착오 없게 할 것 6) 상비부 조직 배정 등 별지가 있는 경우 본회의록에 기재 및 부착할 것 7) 긴급 동의를 제외한 신안건은 토의만 하되 결의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함(당회 현의 → 현의부 경유 → 정치부 검토 후 상정 → 본회의 결의)
26	경청	1) 서기 목사 직인 필요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입 요망
27	경평	1) 회의록의 기록, 보존의 책임자는 서기로 회의록에 서기 이름과 날인일 필요 2) 정치부 보고(상청)된 안건은 동의, 재청 후 가부를 물어 결의, 가결해야 함, 허락하다는 말로는 불충분 3) 189회 22p 정회 기록이 없는 속회 기록 수정 4) 빈칸 두지 말 것 5) 폐회 기록 후 마감은 '끝'으로 하여 빈칸을 두지 말 것
28	경향	1) 공란과 여백을 채워 기록할 것 2) 회의록 수정 시 정정인을 사용 요망 3) 81회 노회 간인 날인 누락 4) 간인을 날인 시 장과 장 사이에 할 것 5)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표기 요망
29	고흥보성	1) 정기회록 및 임원회 등 부분적인 회의록은 구분하여 기재 2) 임사부 보고(완전보고)에 대한 동의, 재청 및 가부를 물어 최종 가결한 내용 누락 3)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날인 누락 4) 각 페이지 간인 누락
30	관서	1) 현의부 보고 누락 2) 정치부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누락 3) 고시부 내용 누락 4) 수습, 재판국 기타 내용 기록 요망
31	광주	1) 2021년 가을노회 회의록 없음, 추후 제출 요함(7/15일(금) 17:00까지) 2) 정기노회 회의록 → 정기회 회의록 용어 수정 3) 허락의 건은 일괄 결의 사항이 없음 <2차>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 회의록 장부 400page 장부에 기록 요망 2) 노회직인, 간인 누락 3) 제121회기 제1차 임시회 회의록 회원 호명에서 목사 회원, 장로 총대로 기재 요망 4) 회의록 끝에 노회 직인 누락, 노회록 기록 보존 책임은 서기에게 있기에 서기 이름, 날인해야 함 5)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는 결의가 아니기에 '가결하다'로 결의 필요
32	광주동부	1) 서기 목사 직인 필요 2) 앞 커버에 노회 이름 등 기록할 것
33	광주제일	1) 정치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완전보고 일괄 결의 사항이 없음('가결하다' 기록)
34	구미	1) 노회록 서기 이름 직인 누락 2)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기로 하다'를 '가결하다'로 기록
35	군산	1) 결표지를 하드 케이스로 할 필요가 있음 2) 간인이 누락 됨 3) 노회록 내 임시회 및 정기회 결의 사항에 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의 날인이 생략, 날인이 필요함 4)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통지서의 제목에 OO 정기회 소집의 건을 OO 정기회 소집 통지(서)로 수정 필요함('건'은 상정 안건임) 5) 정기회 순서에 시찰 보고를 포함시키고, 시찰 보고 시 조직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현황(숫자)을 보고해야 함
36	군산남	1) 결표지를 하드 케이스로 할 필요가 있음 2) 간인이 누락 됨 / 정기회 각 시찰회 보고시 시찰별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수를 보고하고 회의록에 기재 필요(회의록에 각 시찰회 보고사항 없으므로 기재된 부분 수정 필요) 3) 83회 춘기 정기회 회의록에 회록서기 날인이 누락 됨
37	군산동	1) 지적사항 없음
38	김제	1) 정치부 보고 후 노회에서 가결하는 절차가 누락 2) 회의록에 서기 날인(또는 서명)이 누락 3) 회의록 보관 시 유인물 첨부하여 보관할 것
39	김천	1) 장로회원 → 장로총대 용어 수정 2)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 누락
40	남경기	1) 공란과 여백을 채워 작성할 것 2) '가한 줄 아오며'는 '가결하다'로 기록할 것
41	남광주	1) 정기노회 회의록 → 정기회 회의록 용어 수정 2) 2022년 4월 19일 정기노회 시 보고되어야 할 정치부 보고 내용이 2022년 4월 26일 2차 임원회 회의록 뒤에 기재했는데, 기재 순서 조정이 필요 3) 정치부 보고 후 노회 석상에서 동의, 재청 후 가결하는 절차의 기록이 필요 4) 제28회 1차 임시회 정치부 결의는 없음(안건만 있고 결의가 없음)
42	남대구	1) 장로회원 → 장로총대 수정 2)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다' →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3) 정치부 보고 후 노회에서 가결 처리(동의/재청, 가부 절차)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함('가결하다'로 기록)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43	남부산남	1) 임시 보고 허락의 건, 완전 보고 일괄 결의 사항이 없음
44	남부산동	1) 노회직인 누락 2) 정치부, 고시부 등 각 안건 허락 후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로 작성할 것 3) 장로회원 → 장로총대 용어 수정
45	남서울	1) 공란을 채워서 회의록 기재 요망 2) 결의 시 가결하다 빠짐 3) 노회 서기 이름 직인 필요
46	남수원	1) 노회 절차 '유인물' 첨부 요망 2) 긴급 동의안의 '긴급하여 본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안건'만 성립되고 기타 사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함 3)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 순서지 첨부 요망
47	남울산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회의 끝에 '가결하다' 빠짐 <2차> 1) 회원 점명 시 인원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2) 회원 점명 시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3) 회의록을 하드케이스로 제작하여 보관 요망(분실 위험이 있음)
48	남전주	1) 공란과 여백을 채워 기록할 것 2) 노회장 '가결하다'가 빠짐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49	남중	1) 정치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라는 문구보다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로 작성 요망 2) 정기회 소집 통보서 첨부 요망 3) 신안건 토의에 의논할 내용은 당회를 거쳐 현의안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야 함
50	남평양	1) 정기노회를 정기회로 용어 수정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3)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이 누락
51	남황동	1) 노회 서기 이름, 직인 누락 2) 유인물 첨부할 것
52	대경	1) 공란을 채워서 회의록 기재 요망 2) 안건 결의시 '가결하다'는 결의가 필요(189회) 3) 노회 서기 이름, 직인 요망 4)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53	대구	1) 정치부 보고 후 노회에서 가결 처리(동의/재청, 거부절차)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 하여야 함(가결하다로 기록), '허락하다'를 '가결하다'로 기록해야 함 2) 서기 목사 직인 누락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작성
54	대구동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간인 및 서기 도장 누락 <2차>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 제71회 정기회시 10월 27일 오전 10시 속회시에 목사 19명, 장로 2명 계 21명으로는 결의할 수 없음(장로 3인 미만) 2) 노회적인 확인 필요
55	대구수성	1) 정기노회를 정기회로 수정하여 회의록 제출할 것 2) 출석 호명에서 목사회원, 장로총대를 삽입 요망 3) 노회 폐회 후 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 이름과 도장 날인할 것
56	대구중	1) 서기 직인 누락 2) 정치부 보고 시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허락으로 임시 받았으면 전체 안전을 묶어 동의, 재청, 가부로 결의했음을 회의록에 남겨야 함('가결하다' 기록)
57	대전	1) 서기 이름, 직인 누락
58	대전중부	1) 목사총대 → 목사회원, 장로회원 → 장로총대, 정기노회 → 정기회로 용어 정정 2) 노회 시 배부된 인쇄물을 회의록과 함께 보관 요망 3) 정치부 보고 후 '모두 받기로 하다'를 '모두 받기로 가결하다'로 수정 요망
59	대전중앙	1) 정치부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누락 2) 노회 직인, 노회 서기 이름 도장 누락 3)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기입 요망
60	동광주	1) 모든 청원의 건은 일괄 가결 처리가 되지 않음 2) 2021년 가을노회 회의록 누락, 추후 제출 요함(7/15일(금) 17:00까지) 3) 노회 서기 직인 누락 <2차> 1) 지적사항 없음
61	동대구	1) 노회 직인,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 회원 호명에서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수정할 것 3) 74회 정기회 '사직 처리하기로 하다'를 '사직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로 수정 요망
62	동대전제일	1) 정치부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누락 2) 헌의부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누락 3) 노회 직인, 노회 서기 이름 직인 누락 4)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작성
63	동목포	1) 회원 호명에서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수정할 것 2)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 도장이 누락
64	동부산	1) 노회 직인, 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 도장 누락 2) 간인 누락 3) 공란과 여백 채워서 작성 4)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5) 회의 용어상 최종 결정은 '허락하다'로 불충분, '가결하다'로 표기 요망
65	동서	1) 회의록 간인 찍을 것 2) 정치부 보고 시 결의내용을 '가결하다'로 기록 요망
66	동서울	1) 노회 서기 직인 누락 2) 정치부 보고시 '허락하다'를 '가결하다'로 표기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
67	동수원	1) 인쇄용지를 첨부함은 본지와 간인이 철저하게 되어야 함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2) 각 부서 청원의 건은 허락으로 임시로 받고 최종 일괄 동의, 가결된 기록이 누락 됨 3) 노회장, 노회직인 누락
68	동안주	1) 회의록 수기 장부는 400p 하드케이스 장부에 기록 요망 2) 소집 통지서 누락 3) 회원 호명에서 장로 총대로 기록 요망 4) 정회원과 언권회원 구분 요망 5) 정치부 축조 보고한 허락된 안전에 대해 최종 가결 요망 6) 노회록 기록, 보존 책임은 서기에게 있기에 회의록 끝에 서기 이름, 날인해야 됨
69	동인천	1) 장로회원 → 장로총대, 정기노회 → 정기회로 용어 정정 2)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 누락
70	동전주	1) 장로회원 → 장로총대, 정기노회 → 정기회로 용어 정정 2) 각 상비부 보고는 현의부 및 정치부의 안전보고와 별개로 기록함이 좋겠음 3) 정치부 보고된 안전은 일단 허락으로 받고 본회에서 검토, 토의 및 동의 재정을 받은 후 노회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4) 노회장 및 서기 날인 누락 5) 93회기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아 추후 제출하여 검사 필요(7/15일(금) 17:00까지) <2차> 1) 회원 점명 인원수 누락 2) 정회원, 언권회원 구분 3) 정치부 축조 보고한 허락된 안전에 대해 최종 가결 요망 4) 회의록 끝에 노회 직인, 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 날인 누락
71	동평양	1) 정기노회 → 정기회, 장로회원 →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2)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이 누락
72	동한서	1) 노회장, 서기, 회의록 서기 도장 찍을 것
73	목포	1) 회원 호명 누락, 개회예배, 성찬식, 개회선언 누락 2) 현의부 보고, 임시보고, 받기로 가결 누락 3) 정치부 보고 받기로 가결 누락 4) 질차(순서) 미비 5) 서기 목사 직인 누락
74	목포서	1) 노회 폐회 후 노회 직인, 노회장, 서기, 회의로 서기 직인 누락 2)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누락
75	목포제일	1) 모든 허락의 건은 일괄 가결 처리 요망 2) 서기 목사 직인 누락
76	무안	1) 노회 서기 직인 누락 2) 수정시 수정액 사용 금지, 추후 노회록 작성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두 줄을 긋고 정정인을 찍을 것
77	부산	1) 기관 명칭 부산노회, 회의 명칭 정기회, 임시회로 용어 정정 2) 임시회의 경우 소집 기록(소집자, 서로 다른 당회 목사 3인, 당로 3인 이상의 요청) 및 안전이 명시된 문서 첨부 요망 3)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3인의 날인 요망 4) 목사회원, 장로총대 용어 정정 5) 페이지 간인 누락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6) 안건의 결정은 '허락하다'로 불충분, 안전별로 부분 축소 또는 '일괄 가결하다'로 처리 요망
78	부천	1) 큰 제목과 내용의 구분 필요 2) 절차, 질서 간격이 필요 3) 노회서기 직인 누락
79	북전주	1) 노회 직인 누락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3) 정치부 보고 시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를 '가결하다'로 결의했음을 기록 요함
80	북평양	1) 헌의부, 정치부 내용 기록 요망 2)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 기록 누락 3) 노회 서기 직인 누락
81	빛고을	1) 정치부 허락의 건 일괄 결의사항 누락(가결하다) 2)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82	산서	1) 꼼꼼하게 잘 정리됨 2) 차 회기 회의록 감사 시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요망
83	삼산	1) 노회 서기 직인 누락 2) 정치부 보고서 결의된 내용을 허락함이 가온 줄 아오며를 '가결하다'로 기록 요함
84	서강	1) 서기 직인, 노회 직인 누락 2) 80회 가을 노회 회의록 미제출로 추후 제출 요함(7/15일(금) 17:00까지) <2차> 1) 회의록 하드케이스로 제작하여 보관 요망(분실 위험이 있음) 2) 회의록에는 제80회 '정기노회 회의록'이 아니라 '정기회 회의록'으로 용어 변경 3) 정치부 보고 '허락하기로 하다'는 결의가 아니기에 '가결하다'로 결의 요망
85	서경	1) 회의록 작성 잘 됨 2) 하드 케이스로 제작 요망 3) 21당회 확인 가능 자료 첨부 바람 4) 서기 성명 혹은 도장 누락 5)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표기 요망
86	서광주	1) 하드 케이스를 제작 요망 2)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할 것
87	서대구	1) 정기노회 회의록 → 정기회 회의록, 정치부 보고서 '허락하다' →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용어 수정 필요 2) 노회 서기 직인 누락 3) 정치부 보고 후 가결 절차 기재 누락(동의, 재청 및 가부를 묻는 절차 진행이 필요 하며, 회의록에 '노회에서 가결하다'라는 문구 기재 필요), 가결 행위는 정치부가 할 수 없고 노회만 가능함
88	서대전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출할 것을 권함 2) 헌의부 외건 허락이요 건은 마지막 일괄 등의 재청 가결 기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함 3)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할 것
89	서부산	1) 회의 기록이 두서없이 고친 흔적이나 일반 노트에 빈공간이 남은 상태로 기록된바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수정 필요 2) 하드 케이스 회의록에 수기로 빈 줄 없이 꼼꼼하게 작성할 것 3) 노회 직인 찍을 것
90	서서울	1) 서기 목사 직인 필요 2) 정치부 보고 시 '가한 줄 아오며'를 '가결하다'로 기록할 것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
91	서수원	1) 회의 순서의 내용을 기재 바람 2)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 3)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할 것
92	서울	1) 장로회원 → 장로총대, 정기노회 회의록 → 정기회 회의록 용어 수정 2) 회의록에 서기 날인 누락 3) 정치부 등 각 부 보고 후 노회 석상에서 동의, 재청을 거쳐 가부를 묻는 기록이 누락 4) '가결하다'로 결의를 기록해야 함
93	서울강남	1)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3) 정치부 보고 시 허락받은 것은 '가결하다'로 표기 요망
94	서울강서	1)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기로 하다'를 '가결하다'로 수정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
95	서울남	1) 소집 통지서 첨부 요망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정기노회 회의록 → 정기 노회록 용어 수정 3) 서기 목사 직인 누락 4)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는 '가결하다'로 결의를 적을 것
96	서울동	1) 2021년 가을 노회 회의록 미제출, 추가 제출 요함(7/15일(금) 17:00까지) 2)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차> 1) 제65회 '정기노회' → '정기회'로 용어 수정 2) 정치부 보고시 '허락하다'를 총회회의록과 같이 '가결하다'로 결의할 것
97	서울북	1)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도장 누락 2)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회의 자료를 그대로 붙이는 것은 잘못)
98	서울한동	1) 각 부서 허락 부분 최종 가결된 부분이 없으므로 다음 회기부터는 최종 일고라 가결을 받도록 할 것 2) 서기 목사 직인 누락 3) 정치부를 인사부로 쓰지 말고, 정치부 '허락하다'를 '가결하다'로 가결한 내용을 기록 요함 4)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 요망
99	서인천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회원 점명시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표기, 정기노회는 정기회로 표기 3) 서기 날인 필요 <2차>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 회의록 하드케이스로 제작하여 보관 요망(분실 위험이 있음) 2) 노회 직인 누락 3) 정치부 완전 보고가 누락 4) 회원 점명 시 정회원, 언권회원 분리 요망
100	서전주	1) 소집통지서 첨부 요망
101	서중	1)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 유인물 의사자료서 첨부 요망 3) 회원점명 시 정족수 기록하며, 목사회원도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할 것 4) 노회 전 사전모임 상황 기록 요망 5) 헌의부, 정치부 보고 시 뒷부분에 기록한 '~가결하다'는 보고 내용 끝부분에 기록 요망, 속회 시 시작시간 기입 요망
102	서평양	1) 서기 목사 직인 누락 2) 회원 호명에서 장로회원을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3) 정기노회를 정기회로 용어 수정 4) 정치부 보고 시 '허락하다'를 '가결하다'로 기록 요함
103	성남	1) 간인 누락 2) 노회장, 서기 직인 누락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104	소래	1) 정기노회 → 정기회, 장로회원 →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2) 201차 정기회록 노회장, 서기 날인 누락 3) 정치부 보고 후 노회 석상에서 동의, 재청 후 가결하는 절차의 기록이 필요
105	수경	1) 임시노회, 정기노회 → 임시회, 정기회 용어 수정 2) 108회 정기회 교회에 관한 건에서 교회 폐쇄에 관한 것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별도 심의 후 동의, 재청받고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106	수도	1) 노회 직인, 서기 서명 날인 누락
107	수원	1) 가급적 한 권의 각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고 하드 케이스로 제작 요망 2) 100회기 정기노회 → 정기회 용어 수정 3) 정치부 축조 보고(상정) 후 동의, 재청받고 가부를 물어 결의한 사항을 분명히 기재 (가급적 보고 후 뒤쪽에 기재) 4) 101회기 정치부 안건 보고(상정) 후 동의, 재청 및 가부 결의한 내용이 누락
108	순천	1) 노회록 책자 만든 후 직인과 도장은 직접 직인 2) P.62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직인 누락 3) 회원 호명에서 장로총대로 기록할 것
109	시화산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노회 소집 청원서, 회의 절차 유인물 첨부 요망, 조직교회 수를 명시할 것 3) 정치부 보고서 각 항목 '허락하다'로 했으면 마지막 가부를 물어 결의해야 함(가결하다) <2차> 1) 정기노회 → 정기회로 수정 요망 2) 회원 점명에서 정회원과 언권회원 구분 요망
110	신안주	1) 회의 소집 공문 첨부 요망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2) 시찰 교세를 보고 받아 기록 유지 3)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날인 할 것 4) 정치부 보고 후 노회 석상에서 동의, 재청 후 가결하는 절차의 기록이 필요
111	안동	1) 매건마다 허락, 가결하다를 마지막 일괄 '가결하다'로 기록 바람
112	여수	1) 잘 정리됨 2) 서기 서명 날인 누락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
113	용인	1) 서기가 회원을 호명할 때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수정 보고 할 것
114	용천	1) 정치부 보고에서 청원한 건에 대해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일괄 반기로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결하기로 해야 함
115	울산	1) 회의록에 원본대조필과 노회직인, 노회장 서기 서명 없음 2) 정기노회는 정기회로 수정 3) 노회록은 책자로 보관
116	의산	1) 정기노회 → 정기회로 용어 수정 2) 개회 때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입
117	이리	1) 각 회기 회의록에 노회직인,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도장 날인(별도로 하지 않고) 2) 정기회 소집통지서 첨부 요망 3) 결의된 내용은 '가결하다'로 표기 요망
118	인천	<반려> 1) 원본대조필, 노회직인, 노회장, 서기직인 확인 요망 및 정기노회를 정기회로 수정 2) 회무 마지막 도장이 빠져 있음 <2차> 1) 노회 안건은 현의와 긴급 동의안에 의한 건만 처리하여야 함, 신안건 토의에서는 다루지 않아야 함
119	전남	1) 서기가 회원을 호명할 때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수정 보고 할 것
120	전남제일	1) 회의록 정리가 잘 됨 2) 임시회의록에 노회 직인 누락
121	전북	1) 제173회 정기회에서 서기가 회원을 호명할 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를 분류하여 정확하게 기록 요망 2) 폐회 예배를 마치고 노회이름, 노회장, 서기, 회록 서기 각각 이름과 도장이 누락
122	전북남	1) 정기회 소집통보서 첨부 요망 2) 장로회원 →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3) 정치부 보고한 내용을 받아 '가결하다'로 마무리 요망
123	전북서	1) 정치부 보고시 노회가 결정할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했는데,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정도로 승인받은 후 개별 또는 일괄로 노회에서 가결 절차(동의, 재청 및 가부)를 거쳐 '가결하고'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함
124	전북제일	1) 결의 시 '가결하다'가 빠짐 2) 172회 정기회 노회장, 서기 날인 누락 3) 172, 173회 간인 누락
125	전서	1) 정치부 '완전보고 반기로 가결하다' 누락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126	전주	1) p.13 덧붙인 기록에 대한 사유 기록할 것 2) 헌의부, 정치부 '가한줄 아오며' 완전 보고 결의 사항 없음 → '가결하다'로 표기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 요망
127	제주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 2) 프린트된 첨부 회의록에 간인 누락 3) 정기노회, 임시노회 기록 사항을 정기회, 임시회로 용어 수정 4) 노회에 속한 교회 21당회 가능한 자료 첨부 5)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표기
128	충경기	1) 꼼꼼하게 잘 기록되었으나 서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록 후 확인 반드시 필요 2) 각 부의 모든 안건이 허락으로 되었으며 최종 가결된 부분이 없음 3) 당회의 헌의로 회의를 진행하고 신안건 처리 결의는 주의해야 함
129	충부산	1) 정기회 소집 통보서 첨부 요망 2) 회원 호명에서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3) 노회 직인, 노회장, 회의록 서기 도장 누락
130	중서울	1)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이 누락 2) 정치부 보고 시 '가결하다'로 결의된 것을 확인 요망
131	중앙	1) 장로회원 →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2) 62회기 임시회 안건 중 2), 3), 4) 안건에 대해 토의 및 동의, 재청 거부 결의한 내용 누락('가결하다' 기록), 허락은 완전한 결의가 안 됨 3) 서기 및 회록 서기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함
132	중전주	1)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정치부, 헌의부) 일괄 동의, 재청을 기록할 것, '가결하다' 기록 2) 21당회 확인 자료 첨부할 것 3) 서기 서명 날인 누락
133	진주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 2) 21당회 확인 자료 첨부할 것
134	충남	
135	충북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
136	충북동	1) 꼼꼼하게 잘 정리되었음 2) 허락함이 가한줄 아오며,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는 마지막 동의, 재청 기록이 없으므로 일괄 받기로 동의, 재청이 있도록 할 것, '가결하다' 기록
137	충청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차> 1)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기입 2) 신안건 토의에서 규칙 개정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에 당회를 통해 현의된 안건만 다루어야 함
138	평남	1) 프린트 첨부 사항을 수기 작성으로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 요망 2)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할 것 3) 허락함을 마지막 일괄 동의, 가결로 수정 4) '가한줄 아오며'를 '가결하다'로 결의할 것
139	평북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할 것을 권함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2) 21 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3) 회원 호명시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할 것
140	평서	1) 잘 정리됨 2) 21당회 확인 가능 자료 첨부 요망 3)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표기할 것
141	평안	1) 회의록 수기로 작성 요망 2) 임원 선출, 추천, 추대로 쓰이는 단어는 (임원개선) 노회 규칙인지 확인 바람
142	평양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21당회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바람 <2차> 1) 목사는 회원으로, 장로는 총대로 기입 요망
143	평양제일	1) 목사회원, 장로총대 따로 구분하여 기록할 것 2) 언권회원도 기록할 것 3) 정기노회, 임시회, 청원서 첨부할 것 4) 189회 정기회 고시부 결과 보고 → 허락하다는 본회의에서 결의로 결정해야 함 5) 189회 정기회 노회직인, 간인 누락 6) 190회 정기회 허락 후 결의가 없음 7) 회의록 기록 시 빈칸이 없도록 기록해야 함 8) 서기 도장 누락
144	평중	1) 장로회원은 장로총대로 수정 2) 정치부 보고 후 목사 장립, 강도사 인허식을 해야 함에도 순서가 바뀜 3) 서기 직인 누락 4) 현의부 보고 시 보내는 부서 누락 5) 회의록 여백 없이 기록하기
145	한남	1)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 언권 회원이 누락 2) 허락 후 결의가 없음 3) 소집청원서 첨부할 것 4) 노회장 직인, 서기 도장, 노회직인 누락 5) '유인물 대로'시 유인물을 첨부해서 보관할 것
146	한서	1) 인사부 보고시 허락 후 결의 없음 2) 서기 도장 미비 3) 총회 규정에 의한 하드 케이스로 제작 요망
147	한성	<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보고서가 아닌 회의록으로 제출 <2차> 1) 회의록을 하드케이스로 제작하여 보관 요망(분실 위험이 있음) 2) 회원 점명 시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 3) 정치부 보고서 안전마다 가결해 주시고, 최종 '일괄 가결하다'로 결의 요망
148	함경	1) 노회 서기 직인 누락 2)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구분하여 회원 수 기록할 것
149	함남	1) 158회 회의록 노회직인, 서기 도장 누락



순번	노회명	지적사항
		2) 159회 회의록 서기 도장 누락
150	함동	<p><반려> 1) 수기장부에 작성 또는 인쇄회의록(워드)를 하드케이스로 제본하여 제출 요망 2) 결의서가 아닌 회의록으로 제출</p> <p><2차> 1) 지적 사항 없음</p>
151	함북	<p>1) 정기노회를 정기회로 용어 수정 2) 소집통지서 첨부 요망 3) 허락하다 후 일괄 결의 요망 4) 인권회원 숫자 누락</p>
152	함중	<p>1) 회원 호명 시 목사회원, 장로총대, 인권회원으로 구분할 것 2) 가을노회 시 임직식 후 속회 후 폐회해야 함에도 폐회 후 임직식을 함 3) 정치부 보고 시 결의 내용이 없음</p>
153	함평	<p>1) 노회 회의록 서기 이름, 직인 누락 2) 소집 통보서 첨부 요망</p>
154	함흥	1)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를 일괄 처리하여서 가결하다로 작성 요함
155	호남	<p>1) 개회선언 시 목사회원을 정회원과 인권회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요망 2) 정치부 보고사항 각 건을 보고 후 일괄 받기로 동의, 재청 절차를 밟아야 함</p>
156	황동	<p>1) 정기노회 → 정기회, 장로회원 → 장로총대로 용어 수정 2) 노회 폐회 후 서기 이름과 도장이 누락</p>
157	황서	<p>1) 노회 서기 이름, 도장 날인 필요 2) 회원 호명에서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록할 것</p>
158	황해	1) 정치부 보고 허락함이 가한줄 아니다 → 정치부 완전보고 받기로 가결하다로 수정
159	뉴질랜드	1)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도장 누락
160	미주동부	1) 노회직인,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도장 누락
161	미주서부	1) 목사는 회원, 장로는 총대로 기입 요망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노회록검사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노회록검사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산 증액 청원

제106회기 노회록 검사에 있어 현 노회록검사부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노회록 검사를 받지 아니한 노회의 행정제재를 막고자 3차까지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동안 검사 인력을 최소화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07회기 노회록 검사 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합니다.

2. 제2차 노회록 세미나(노회록 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

노회 회의록 작성과 총회 발전을 위하여 노회록검사부원의 실무 교육이 필요하고, 노회록이 천차만별이고 통일성이 없으므로 각 노회 서기 및 회록서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회록검사부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총회 산하 각 노회의 발전과 각 노회의 행정 통일을 이룰 수 있기에 예산 증액을 요청합니다.

각 노회 서기 교육과 회록서기 교육비는 각 노회가 부담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노회록검사부 예산이 600만 원이고, 해마다 예산 증액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행사를 하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107회기에도 노회 회의록 실무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회록 검사, 노회록검사부 실행위원 실무 교육, 각 노회 서기 및 회록서기 교육
회의비 : 6,000,000원, 세미나비 : 9,000,000원 합계 : 15,000,000

2022년 9월

노 회 록 검 사 부
부 장 김 석 용
서 기 황 연 호